
2021년 대구시설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과업내용서

2021. 2.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1년 대구시설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가입대상 : 임직원 869명 (남 691명, 여 178명)
- 기초금액 : 금217,250,000원(금이억일천칠백이십오만원)
- 입찰방법 : 경쟁입찰 / 최저가 낙찰제

II 계약조건

□ 일반 계약사항

- 가입대상 및 인원 : 임직원 869명 (남 691명, 여 178명)

(2021. 1. 기준)

구분	위험급수	인원(명)		평균연령	비고
남성	1급	691명	98명	47세	
	2급		593명		
여성	1급	178명	92명	47세	
	2급		86명		

※ 신규입사 및 퇴직에 따라 가입대상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원 변동분에 대해서는 계약만료 이후 별도 정산함

- 가입조건 : 가입대상 모두 조건 없이 가입(기왕증자, 현증자 포함)
-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업무상·업무 외 불문, 24시간 365일 보장)
- 보장개시일 : 최초 계약 체결시점부터 면책기간 없이 즉시 보장
- 보험료 적용 : 위험급수에 따른 남녀 평균연령별 단일보험료 적용
- 보험료 납입 : 1년 일시납

※ 개인 실손보험의 경우 별도 추가 납부 예정(가입희망자에 한함)

○ 보험기간 중 입·퇴사자 관리

- 가입자 신규, 해지 등 신분변동사항 통보 : 수시
- 신규 입사자는 발령일로부터 보장을 즉시 개시하고, 보험료는 계약만료시 정산
 - ※ 중도 입사한 직원의 변경 통보가 지연 또는 누락되더라도 재직증명서 또는 공단이 발행한 확인 서류에 의거 공동수급사별로 보장하여야 함
-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보장은 해제하고, 보험료는 계약만료시 정산
- 보험료 정산 : 인사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일할계산 원칙)

□ 보장내역

○ 보장내역

- 입찰시 계약 조건은 기본보장내역에 한함
-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 추가보장내역 (실손의료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특약사항)을 제시하여 가입희망자에 한하여 가입·보장해야 함

구 분	지급사유	보장금액	비 고	
기본 보장 내역	사망	상해	1억원	
		질병	7천만원	
	후유장해	상해	1억원	장해비율 적용
		질병	7천만원	
	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	1천만원	최초 1회한
		뇌혈관질환	1천만원	최초 1회한
		암	2천만원	최초 1회한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30%,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10%)
	수술비	상해·질병으로 수술시	26만원 ~ 130만원	수술분류표에 의한 지급
	입원일당비	상해, 질병	5만원	입원첫날부터 180일 한도
	골절진단비	골절진단시	100만원	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화상진단시	100만원		
추가 보장 내역 (선택 사항)	실손의료 보험	상해·질병 통원	30만원(외래25/처방조제5)	한방·치과·산과 포함
		입원의료비	3천만원	
	실손의료 보험 특약사항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350만원	50회 한도보장
		비급여주사료 MRI/MRA	250만원 300만원	50회 한도보장 한도 내 보장

□ 보장범위

○ 사망보험금

- 상해 사망시 1억원, 질병 사망시 7천만원 보상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모두 보상
- 본인 과실 유무 및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후유장해보험금

- 장애등급 및 지급률에 따라 상해후유장해 1억원, 질병후유장해 7천만원까지 보상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모두 보상
- 본인 과실 유무 및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진단비(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암)

- 뇌혈관질환 1천만원, 허혈성심장질환 1천만원, 암 2천만원 보상
- 경계성종양·갑상선암 진단시 주 계약의 30%, 기타피부암·제자리암 진단시 10% 지급
- 최초 진단시 1회에 한하여 지급(면책기간 : 없음)
- 진단 확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함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모두 보상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수술비

- 수술분류표에 의해 종별(1종~5종) 매 수술시 26만원~130만원 지급
- 1종(26만원), 2종(52만원), 3종(78만원), 4종(104만원), 5종(130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입원일당비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해 병의원(한방병원 포함)에 입원시
입원첫날부터 1일당 5만원 보장(180일 한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 진단확정시 매회 100만원 지급
- 면책일 없음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 진단확정시 매회 100만원 지급
- 면책일 없음

○ 실손의료보험 및 특약사항(추가가입사항)

구 분		보상하는 내용(보장범위)	가입금액	
상해 · 통원	입원	보상대상의료비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	1사고당 3천만원	
	통원	외래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계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연간 180회 한도	1회당 25만원
		처방조제비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계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연간 180건 한도	1건당 5만원
추가보장특약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보상대상의료비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 · 통원 합산 최대 50회 한도)	350만원 한도	
	비급여주사료	보상대상의료비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 · 통원 합산 최대 50회 한도)	250만원 한도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보상대상의료비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300만원 한도	

- 입원의료비

- 모든 종류의 상해·질병(출산·한방·치과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별 동일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횟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 보상
- 상급 병실료 차액은 입원 시 실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 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출산, 한방, 치과 입원시는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종료일로부터 180일 한도 보장
-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 포함(단, 현증자는 감독관청규정에 따름)
- 입원의료비 대하여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중복보상 불가

- 통원의료비

- 병(의)원에 통원하여 치료(출산·한방·치과 포함)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 조제비를 각각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 한도 내 보상

〈 항목별 공제금액 〉

구 분	항 목	공제액
외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동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법 제3조의 3에 의한 종합병원	1만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 출산, 한방,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 보상
-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 포함
- 통원의료비 대하여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중복보상 불가

○ 면책기간 : 모든 보장항목은 면책기간 없이 즉시 보장

III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도 100% 중복보상
- 정상적으로 보험가입 후 지급 사유 발생시 100% 보험금 지급

IV 입찰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명보험업(생명보험 :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 3833)으로 등록하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비율 100%이상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계획을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입찰서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단독 및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공동계약시 업체별 각각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시에는 대표보험사를 선정하여 신고하고 계약체결 등 공동수급체와 공단 간의 제반업무는 대표보험사가 처리해야 하며 대표보험사가 계약이행 불능시 공동수급체 구성 잔여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단체보험 관련 상담·접수 등을 위해 우리 공단 전담 창구 및 담당직원을 배치하여야 함
- 대구시설공단 임직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됨을 계약시 명시
-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시에도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함